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한 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1/ 9/ 1 통권 1534호

CEO·CFO·COO · 회계책임자· 조세전문가· 재경실무자· 총무담당자· 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어익원장

균립하던 황제, 섬기는 CEO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중 회계사 :
쿠팡(한국기업)의 미국 뉴욕 증시(해외시장) 상장추진
과 국내회사 해외기업의 차이 비교

CFO·외계실무자· 조세전문가 정보

- 유형자산의 진부화 등에 따른 감액·폐기 처분시의 회
계세무처리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편법중여 혐의 주택 취득 연소자 등 세무조사 착수
- 2020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 새로운 보험회계기준(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시행 준비,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활용하세요."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색연**

- 과세기준일 현재 휴업중인 법인이라도 주민세 균등
분의 납세의무가 있음 (p.14)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부동산 상속·증여신고에서 부동산 종류별 시가·법정평가액 결정방법>

평가단계	개념, 평가방법, 규정, 사례
시가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가(아파트는 같은 단지 동일평수의 국토교통부 고시 시가 또는 거래 사례 가액 적용 등) · 분명한 비교시가가 없는 부동산은 개별공시가가 등
개별공시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상의 국토부 개별공시지가 → 가장 최신의 토지공시지가임
비교공시가	개별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유사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하여 비교계산금액
지가급등지역	개별공시가(또는 비교공시가) × 배율적용방법
일반건물	국세청장 매년 고시가(㎡당 신축가액 × 구조 × 용도 × 위치 × 신축연도지수)
오피스텔 등	건물구분소유+토지를 공유하는 대단지 열거상용건물 등 : 국세청 특별고시가(대단위 상가별로 개별 일괄고시함)
아파트 등 주택	개별주택, 공동주택의 국세청 일괄 ① 고시주택가격, ② 개별고시주택가격 없으면 인근 유사 표준주택 고시가격으로 비준가격 계산함
임차권 등기재산	임대보증금+(1년간 임대료 ÷ 12%)의 합계액
저당권 설정재산	상기의 법정평가액과 저당권, 담보권, 질권설정가액 중 더 큰 금액으로 함

(안세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534 호 / 주간 35호

2021. 9. 1. (수)

· 발행인: 이윤선
· 제작: (주) 안세회계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FAX: (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02) 829-7575
팩스:02) 718-8565
- 부산·경남
전화:051) 642-3988
팩스:051) 642-3989
- 대구·경북
전화:053) 654-9761
팩스:053) 627-1630
- 대전·충청
전화:010) 3409-2427
팩스:042) 526-1686
- 수원·안산
전화:010) 5255-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198993-13-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지원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부동산 상속·증여신고에서 부동산 종류별 시가·법정평가액 결정방법	표지
긴급시사해설	쿠팡(한국기업)의 미국 뉴욕 증시(해외시장) 상장추진과 국내회사·해외기업의 차이 비교	2
CEO에세이	군림하던 황제, 섬기는 CEO	3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이연법인세부채를 차감해야 하는 것인가요	5
	-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문의	
	-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설비에 대해 해외 이관시 회계처리 질의	6
눈에 맞는 절세미인	유형자산의 진부화 등에 따른 감액·폐기·처분시의 회계세무처리 방법	7
매일 절세재무요점	- 개인 기준 바뀌는 세법	10
	- 2021년 세법개정안 주요 건의 과제	11
직장인 Survival	바라는데로 이루어지는 자기암시법 12가지	12
최신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체육교습소에서 아이들에게 이론·지식·기술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면서 체육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 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서면부가-6079, 2021.01.08)	13
	- 휴업 여부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과세기준일 현재 휴업 중인 법인이라 하더라도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가 있음 (지방세정책과-236, 2021.01.15)	14
세정뉴스와 해설	1가구 1주택자 과세기준 9→11억원 상향...기준 '상위 2%'안 폐기	15
마케팅 Tax consulting	과세기준일 현재 휴업 중인 법인이라도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가 있음	14
세무정보	-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
	- 편법증여 혐의 주택 취득 연소자 등 세무조사 착수	20
회계정보	- 2020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25
	- 새로운 보험회계기준(K-IFRS 제117호 '보험계약') 시행 준비,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활용하세요."	37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19

쿠팡(한국기업)의 미국 뉴욕 증시(해외시장) 상장추진과 국내회사 · 해외기업의 차이 비교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 · 세무고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기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컨설팅
 (829-7575)

개념구분	국내기업주식거래	외국기업주식거래
개념차이	대한민국에 본점, 주사무소 등록회사 해외기업의 국내자회사, 투자관계법인	대한민국 외인 해외에 본점 · 주사무소 등록한 회사 외국기업의 국내 지점 · 연락사무소
과세원칙	전세계 소득과세(국내소득+해외사업이익)	국내원천소득만 과세(국내 지점 등 고정사업장에서 발생된 매출과 이익만 과세)
상장요건 핵심	최근 3년간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실현 등(최근 적자기업은 상장 불능=우회상장)	손익계산서상의 이익실현요건 없음(계속 적자기업도 상장 가능)
주주의결권	차등의결권제도 없음(주주평등원칙)	29배의 차등의결권 신청 가능(정관에 황금주 도입 가능)
개별주식거래차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액주주는 장내거래 주식양도차익과세 없음(증권거래세만 부담) 대주주(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 4월 1일부터 시가총액 3억원 이상)는 1년 미만 30%, 3억 초과 25%, 3억 이하는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액주주 · 대주주 모두 20%(주민세까지 22%) 분리과세 연간소득의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국내 다른소득의 종합소득에 합산 안함 1년간 차익 · 차손을 합산순액으로 과세
주식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장주식 양도차익부분은 과세 제외 펀드 내의 배당부분은 배당소득과세 	대부분 배당소득으로 종합합산과세(브라질채권 등 특수열거는 예외)
공모주펀드	내국인 참여 가능함	내국인 참여기회 없음

전직원 긴급시사해설

군림하던 황제, 섬기는 CEO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krhee@hotmail.com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이란 명저에서 진화론을 주장했다. 생물들이 시간을 뛰어 넘는 생존 조건은 무엇인가? 공통처럼 거대한 몸집의 괴력이 결코 아니다. 환경에 적응하면서 끊임 없는 자기 변신, 진화하는 자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게 그의 결론이다.

세계 경영을 외치며 대마불사의 상징, 공통처럼 군림하던 재벌.

"회장님, 세상이 변했습니다."

재벌 오너인 황제(?)에게 당시 정부의 고위관료가 그 그룹의 최후를 통지하는 자리에서 일갈했던 말이다. 그 재벌의 붕괴음보다 더욱 전율스런 굉음이 아닐 수 없다. 힘을 믿고 군림하면서 환경에 적응치 못하고 '자기변혁(Renewal)'을 외면한 오만에 대한 질타라고 할 수 있다.

어디 그 재벌뿐이라.

회사를 아끼는 부하들의 말을 무시하며 자기 눈에 최고의 제품이라고 만들어 의기양양 시장에 내놓았다. 그러나 고객의 외면으로 참담한 참패를 당한 결과 무거운 재고로 큰 손해를 보게 됐다. 그러자 반성은커녕 오히려 놀랍게도 고객의 안목을 깔보며 욕하고 발작적으로 분노하던 기업의 창업자인 오너가 생각한다.

그 역시 승승장구하던 성공과 힘을 믿고 고객과 환경을 무시한 채 오만과 아집에 빠졌다.

외환 위기 이후 단 3년간 30대 재벌 중 14개 재벌이 망하거나 오너가 바뀌었다. 전문가들은 21세기 기업의 흥망조건을 '디지털 다윈리즘(진화론)'으로 요약한다. 그것을 풀이하면 오만과 아집을 버린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과 겸손함을 토대로 한 유연성이라 할 수 있다. 미국 AT & T에서 38년간 근무했던 로버트 그린리프는 가장 생명력있는 일터를 창출하기 위해 '섬기는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주창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가운데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섬기는 리더십'의 핵심이다."

요즘 기업은 조직도를 과거와 달리 역삼각형으로 그리는 기업이 상당히 많다. 맨 위에 사

장 그 다음이 임원 그리고 밑에 사원이 있던 과거의 삼각형구조가 아니다. 그 반대다. 맨 위에 고객이 있다. 그 다음에 사원과 임원 그리고 맨 밑에 CEO가 있다.

CEO가 황제처럼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자기변혁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조직도다. 고객과 환경을 중시하고 임직원을 섬기는 CEO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생존 철학의 소산물이 아닐 수 없다. 고객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심지어 미국의 흑인 빈민을 상대로까지 시장조사 비용을 아끼지 않는 FILA코리아의 윤윤수 사장은 말한다. "직원들이 사장 방으로 찾아오기를 바라기 전에 담당자를 찾아 나섭니다. 거의 모든 결재는 현장에서 담당자들과 대화를 통해 결론을 냅니다. 또 그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내 의견에 반할지라도 담당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나는 힘이 없는(Powerless) 사장입니다." 그렇게 고객과 환경 그리고 임직원을 섬기는 유연성과 겸손함이 '다위니즘'에 입각한 그의 성장비결일 것이다.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이연법인세부채를 차감해야 하는 것인가요

- Q** 배당가능이익 계산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를 남깁니다.
 배당가능이익 = 순자산(자산-부채) - 자본 -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 - 자본조정 중 부가계정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에 포함된 미실현이익
 이렇게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차감할 미실현이익 중 이연법인세부채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A**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미실현이익을 가감하는데, 이때 이연법인세도 미실현이익에 해당하므로 가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문의

- Q** 당사는 A사와 부스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등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 아래 잘 못된 부분이 있는지요?
 >> 당사가 A사에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미발행 항목
1. 당사가 고용한 기간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상당액(월 고정액). → 세금계산서 발행 (기타 매출 처리)
 2.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받음 → 세금계산서 미발행 (판매장려금 처리)
 3. 당사가 고용한 기간제의 퇴직금을 지원 받기로 함(원천징수는 당사가 함) → 세금계산서 미발행 (판매장려금 처리)
- A**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면서 발급하는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는 대금 수수항목은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상당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고 퇴직금의 실질 지급주체가 A사라면 퇴직금도 세금계산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판매실적 인센티브는 판매장려금 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설비에 대해 해외 이관시 회계처리 질의

Q 당사에서 설비를 해외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이 설비는 50%는 대금이 지불되었고 50%는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계정과목 기타투자자산은 대금지급이 완료가 되었고,
계정과목 선수금은 대금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선수금을 사용하였습니다.
문의할 사항은, 대금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선수금을 사용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다르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대금지급을 완료하지 않은 자산을 해외에 매각하는 거래의 경우 우선 귀사가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은 해당 자산에 대한 대금지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법률적으로 귀사의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처분이익을 제외한 전체금액에 대해 기타투자자산으로 반영하고 선수금 계정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일용직 근로자 적격증빙 관련 문의

Q 일용직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시에 회사 측에서 적격증빙에 기재해야 할 금액은 세금을 제외한 금액인가요? 포함한 금액인가요?

A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내역 및 원천징수영수증이 적격증빙이 되며 세금포함한 총액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유형자산의 진부화 등에 따른 감액·폐기·처분시의 회계세무처리 방법

상담실 백종훈 차장

자산에 있어 가치의 감소는 물질적 또는 물리적 요인에 기인한다. 따라서 재고자산의 경우는 손상과 변색 등의 물질적 원인에 의해서 자산가치가 감소하며, 건물·기계 등의 유형 고정자산은 실제 사용과 시간 경과에 의해서 가치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물질적으로는 아무런 가치의 감소가 없어도 유행에 뒤지거나 비효율 등의 원인에 의해서 자산의 가치를 감소시켜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것을 자산의 진부화라고 한다.

급격한 기술혁신 등의 영향으로 근래에는 자산이 진부화되는 빈도수가 증가하였는바, 이러한 원인에 의해 자산의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또는 아예 자산을 폐기하는 경우의 세무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유형자산의 감액손실

기업환경의 변화나 규제 등의 영향으로 유형자산의 효용이 감소하거나 시장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하는 등 유형자산의 진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장부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해당 유형자산의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회수가능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반영하고 원래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감액손실로 처리하면 된다.

기업회계상 감액손실을 인식한 경우에는 감액을 초래한 상황의 변화나 내용을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기재하고 감액손실의 평가에 사용된 회수가능가액의 산정방법과 그 금액을 공시하면 된다.

① 유형자산을 10만원에 취득시 회계처리

차) 유형자산 100,000 대) 현금 100,000

② 유형자산의 진부화 등으로 회수가능가액이 6만원이 된 경우

차) 유형자산감액손실 40,000 대) 감액손실누계액 40,000

※ 감액손실 = 장부가액 - 회수가능가액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회수가능가액

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유형자산의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바, 기업이 유형자산 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이를 부인하여 유보 처분하였다가 감액손실이 환입되거나 처분되었을 때 유보처분된 금액을 사후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법인세법에서도 천재·지변·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등의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고정자산에 한해 시가와 장부가와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바, 이렇게 계상된 감액손실은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하게 된다.

유형자산을 폐기하는 경우의 세무회계처리 방법

많은 사람들이 폐기와 처분에 대해 "폐기처분"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폐기 및 처분"이라고 구분해서 사용하여야 하며, 세무상·회계상의 처리방법도 다르다.

즉, '폐기'라 함은 해당 유형 자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버린다는 의미이나, 아직까지는 기업의 내부에 해당 유형 자산을 소지한 상태이므로, 추후 매각 등의 경우에 대비해 비망가액을 남기는 처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유형자산이 진부화되어 '폐기'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중 비망가액(1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폐기손실로 회계처리 하면 된다.

◇ 장부가1천만원, 감가상각누계액8백만원인 자산을 폐기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차) 감가상각누계액	8,000,000	대) 유형자산	9,999,000(비망가액1천원 남기고 장부에서 없음)
유형자산폐기손실	1,999,000		

유형자산을 폐기,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폐기자산의 사진, 내부품의서, 감가상각대장 사본(취득원가, 총당금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 등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추후 해당 처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유형자산 처분시의 세무회계처리 방법

유형자산이 진부화 되어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이란 해당 자산을 유·무상으로 외부에 유출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산을 폐기와 동시에 처분하는 경우와, ② 폐기되어 장부상 비망가액만 남겨져 있는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경우는 유형자산의 폐기와 똑같이 해당 자산을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는데 이때에는 비망가액은 남기지 않는다.

또한 폐기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은 폐기손실, 처분손실 등의 영업외손익으로 반영하여 처리하면 된다.

물론, 유형자산의 처분이나 영구적 폐기의 경우에도 해당 자산의 사진, 내부품의서, 감가상각대장 사본 등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도 자산의 처분일이나 영구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유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사례별 회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례1] 장부가 1천만원, 감가상각누계액 8백만원인 자산을 폐기처분(소각)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차) 감가상각누계액	8,000,000	대) 유형자산	10,000,000
유형자산폐기손실	2,000,000		

[사례2] 장부가 1천만원, 감가상각누계액 8백만원인 자산을 1백만원에 매각처분시의 회계처리

차) 현금	1,000,000	대) 유형자산	1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8,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000		

[사례3] 이미 폐기되어 비망가액만 남아 있는 자산의 소각(폐기처분)시의 회계처리

차) 유형자산폐기손실	1,000	대) 유형자산	1,000
-------------	-------	---------	-------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개인 기준 바뀌는 세법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1000만원 이하 15 → 20 1000만원 초과 30 → 35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인상(만원)	단독가구 2000 → 2200 외벌이가구 3000 → 3200 맞벌이가구 3600 → 3800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9% 분리과세 신설
청년 장기펀드 소득공제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화

주식 · 펀드 · ETF 비교

	주식	펀드	ETF
장중 거래	가능	불가능	가능
운용 보수	없음	1~3%	0.5% 내외
결제일	거래일+2영업일	거래일+최대 8영업일 (펀드별로 차이 가능)	거래일+2영업일 (해외 상장 펀드는 국가별로 다름)
특징	개인이 직접 매매. 매매 단위는 단일 종목. 고위 험 고수익	펀드 매니저의 운용 역 량에 따라 수익률 결정	종목들을 묶음으로 투자하는 펀 드와 실시간 1주씩 매매 하는 주 식 장점 혼합



2021년 세법개정안 주요 건의 과제

법령	제도	정부 개정안(혹은 현행)	개선안
법인세법	이월결손금 공제	공제한도 : 당해연도 소득의 60%(중소기업은 100%)	코로나19 피해 업종은 한시적(~2024년)으로 공제한도 100% 적용
국제조세조정법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 적용 국가 확대 : (법인세부담률) 15% 이하 →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의 70%(17.5%) 이하	현행 유지 (법인세부담률 15% 이하 국가에만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대기업 집단의 개별기업별로 미환류소득 산정 후 과세	기업집단이 초과환류 시, 소속 중소기업은 과세 배제
	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	공시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한 시설은 투자세액공제 미적용	현행 유지 (투자세액공제 적용)



수도권 외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현행	개정	
청년·장애인 등 1인당 공제금액 (수도권 외)	중소(3년간)	1,200만원	1,300만원	+100만원
	중견(3년간)	800만원	900만원	
	대기업(2년간)	400만원	500만원	
적용기한		일몰(~'21. 12. 31)	3년 연장(~'24. 12. 31)	



바라는대로 이루어지는 자기암시법 12가지

1. 나는 세상이란 무대의 가장 멋지고 빛나는 주인공이다.
2. 나는 오늘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건강한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중이다.
3.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열정과, 힘을 가지고 있다.
4. 나는 내가 살아가는 매일 매순간이 즐겁고 행복하며 그 누구보다 자신감 넘치는, 열정이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5. 나는 내가 일하는 위치에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며, 항상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낸다.
6. 나는 내가 하는 생각이 항상 좋은 아이디어로 가득하고, 지금 생각한 이 아이디어로 막대한 부를 쌓을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이미 부의 축적이 시작되었다.
7. 나는 수천억대 부자가 되는 운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8. 나는 뛰어난 분석능력과 객관적사고, 직관과 판단력으로 매 순간 최고의 결정을 내릴 줄 알고, 옳고 그름을 분별 할 줄 알며,온화하지만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줄 알고, 따뜻하지만 예리한 눈으로 사람을 구별할 줄 안다.
9. 나는 항상 즐거움과 긍정의 기운이 넘치고, 나의 능력으로 인해 뛰어난 좋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10. 나는 내 삶이 그 누구보다 행운이 넘치는 성공한 인생의 삶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11. 나는 나를 비롯한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과 웃을 일만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나로 인해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더욱 행복해 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12. 나는 지금 이 순간 내 생각과 목표한 것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다.

최신 판례 예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체육교습소에서 아이들에게 이론·지식·기술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면서 체육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서면부가-6079, 2021.01.08

■ 질 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체육교습업'이 신설됨
 - '체육교습업'의 범위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직접 이용료를 받고 축구, 농구, 야구, 수영, 줄넘기, 배드민턴, 롤러스케이트, 빙상 등의 운동 종목을 30일 이상 교육하는 업으로 규정

질의내용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교습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회 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된 체육교습소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이론·지식·기술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면서 체육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8, 2020.8.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된 합기도장에서 공급하는 합기도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73, 2017.12.20.

사업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수영장업 시설 기준에 의한 어린이 이용 수영조를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구청장)에 신고한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수상안전교육, 생존수영교육, 영법교육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면서 수영장 등 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지주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 시 자산조정계정 중 처분주식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과 그 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선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봄

법인세제과-17, 2021.01.11

■ 질 의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 적용방법

■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의 과세특례 적용에 따라 지주회사가 자산조정계정을 계산한 이후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선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계산

하는 것임

Marketing Tax consulting

과세기준일 현재 휴업중인 법인이라도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가 있음

휴업 여부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과세기준일 현재 휴업 중인 법인이라 하더라도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가 있음

지방세정책과-236, 2021.01.15

질 의

과세기준일 현재 휴업 중인 법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 여부

회 신

- 舊 「지방세법」* 제74조제4호는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2021. 1. 1.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한편 같은 법 제75조제2항은 주민세 재산분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어떤 사업소가 과세기준일 현재 휴업 중이더라도 휴업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소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또한, 같은 조 제1항제2호는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라고 규정하면서, 휴업 여부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과세기준일 현재 휴업 중인 법인이라 하

더라도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과거 해석) 사업장이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 휴업 중이라도 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음(내무부 세정13407-901, "95. 9. 18.)

- 다만, 이는 과세권자가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가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소득세제과-51, 2021.01.21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제1항 적용가능여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기간 내에 발생한 상가임대료가 연체된 경우로서 연체된 상가임대료를 공제기간 내 사후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법 제96조의3에서 규정한 여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법 동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1가구 1주택자 과세기준 9→11억원 상향... 기존 '상위 2%'안 폐기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앞서 여당이 추진했던 공시지가 '상위 2%' 기준은 여야 합의에 따라 폐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원이 된다.

다만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동명의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여야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1주택자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점, '상위 2%' 기준을 적용할 때 현행 기준선이 약 11억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극적으로 타협안을 도출했다.

민주당은 고액자산가에 부과한다는 종부세 취지를 고려해 과세기준을 상위 2% 정률로 수정하고자 했으나, 조세 체계에 어긋난다는 비판론을 막판에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비용 세액공제...SLB 도입검토

정부가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지원비용에 대해 세액공제하고, 지속가능연계채권(Sustainability-linked bond, SLB) 도입을 검토한다.

지속가능 연계 채권이란 채권에서 제시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달성 수준을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이자율이 오르는 식의 채권을 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ESG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요소를 기업 경영 실적으로 판단하는 국제 투자 금융의 기준을 말한다.

아직 국가적으로 합의된 기준은 없지만, 심각한 기후 환

경 문제에 대해 국제 사회가 공조하고,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현재도 기업 경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소기업의 ESG 교육 요원의 인건비와 관련 경비를 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올해 안에 한국형 K-ESG 가이드라인 공통 문항을 마련하고 오는 2023년까지 기업 규모·업종별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ESG 경영·투자정보 플랫폼 구축 및 시스템 연계도 진행하고, ESG 목표와 수익률을 연계한 지속 가능 연계채권 도입을 검토한다.

연말까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마련해 녹색에 해당하는 기업과 산업에 대한 기준을 정립할 예정이다.

고령자 종부세 유예안 폐기... 고액자산가 절반이 종부세 24만원

1주택자 고령층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매각 또는 상속·증여할 때까지 미룰 수 있게 하는 법안이 폐기됐다.

그간 제출된 26건의 개정안 대신 위원회 대안을 선택하면서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법안이 제외된 것이다.

고령자 종부세 유예는 고령자가 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종부세를 매년 내거나 아니면, 주택 처분 때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기준 개인 종부세 납부자의 절반이 1인당 24만원 미만의 세금을 부담하고, 80%가 1인당 56만1000원 미만의 세금을 부담했었다.

이것이 11억원으로 상향되면 상위 1% 수준의 고액 자산가라도 납부하는 종부세가 크게 줄어 종부세 자체가 다주택자나 초고가 자산가 등 소위 여력 있는 사람들에게 한정된다.

게다가 개인 종부세 과세대상의 30% 정도가 1년에 10만원대의 세금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과세 기준선 11억 조정 시 상위 2%대의 부동산 자산가에 유예혜택을 주는 것이 형평에 맞는지 또한 논쟁이 됐다.

조세특례제한법 ·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2021. 8

□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추진하고, '21.8.10.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 · 소득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령)

- 폐업 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서, '21.1.1.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20.2.1.~'21.6.30.에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 적용

②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관련 위임사항 등 규정

〈 법 개정내용 ('21.8.10 공포) 〉

- ▶ (조특법)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 (소득법)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매년 → 매월), 과세자료 관련 과태료 신설

- 용역 알선·중개 사업자 등이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1명당 300원, 최대 연간 200만원 세액공제(조특령)
- 과세자료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소득령)
 -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미제출시 건별 20만원, 불성실 제출시 건별 10만원 과태료 부과
 -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제외
 - * 과세자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인원 수가 전체 인원 수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
-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 부여(소득령)
 - *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
 - ※ 쿠팡서비스, 대리운전 용역을 플랫폼을 통해 알선·중개 시 플랫폼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함
- 과세자료 제출 관련 서식 정비(조특규칙 · 소득규칙)

* 세액공제 신청 서식 신설(조특규칙), 과세자료 월별 제출 관련 서식 정비(소득규칙)

□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21.8.13.~9.23., 40일),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동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참 고

관련 개정요강

(1)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2021년 세법개정안」('21.7.26.)에서 既 발표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액)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시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1.1. 이후 임대료 인하분부터 적용 ○ (임대인) 부동산임대사업자 ○ (임차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기본법」 § 2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0.1.31.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 중 ② 사행성 업종·과세유흥장소 등을 경영하지 않는 자 ③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④ 사업자등록을 한 자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간) '20.1.1. ~'21.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대상 임차인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 요건 ①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1.6.30.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 중 <p style="text-align: center;">② ~ ④ (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업한 임차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업 전 ①~④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21.1.1.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 '20.1.1. ~'22.6.30.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관련 세부사항 규정

〈법 개정내용(소득법 § 104의32)〉

-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1.11.11. ~ ’23.12.31 적용) ⇒ 시행령에서 공제금액·한도 규정

현행	개정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공제금액 및 한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금액) 용역제공자* 1명당 3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한 인원으로 한정 ○ (공제한도) 연간 200만원

〈개정이유〉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에 따라 과세자료 제출사업자에게 인센티브 부여

〈적용시기〉 '22.11.11. 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3) 과세자료 제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법 개정내용(소득법§ 173②)〉

- ◇ 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국세청이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불응 시 과태료 부과

현행	개정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 등에 대한 명령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자료 건별 20만원 ○ 과세자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자료 건별 10만원 ※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인원 수가 전체 인원 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 부과

〈개정이유〉 과세자료 관련 과태료를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 부과기준 마련

〈적용시기〉 '22.1.1.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

(4)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 부여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대상 사업자 ○ 용역* 관련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운전, 소포배달, 골프장경기 보조용역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대상 사업자 확대 ○ (좌 동) ○ 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 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함

<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일 발표) 지원을 위해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

<적용시기> '22.1.1. 이후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8월 20일 (금)	8월 23일 (월)	8월 24일 (화)	8월 25일 (수)	8월 26일 (목)
미 달 러 (USD)	1174.50	1176.70	1174.00	1168.00	1166.50
일 본 엔 (JPY)	1069.92	1070.94	1070.34	1064.77	1060.31
영 국 파 운 드 (GBP)	1601.25	1603.08	1611.37	1603.43	1605.45
캐 나 다 달 러 (CAD)	915.54	917.72	927.95	927.54	926.42
홍 콩 달 러 (HKD)	150.78	151.05	150.66	149.98	149.85
위 안 화 (CNH)	180.77	181.04	180.71	180.02	180.20
유 로 화 (EUR)	1371.52	1376.03	1379.04	1373.16	1373.09
호 주 달 러 (AUD)	839.47	840.10	846.92	847.50	848.69
싱 가 폴 달 러 (SGD)	860.63	863.54	865.62	862.15	862.29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77.10	277.69	277.80	276.88	277.41

편법증여 혐의 주택 취득 연소자 등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2021. 8

- (착수 배경)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거래 정보를 수집하여 탈세혐의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 최근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편법증여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등 다수의 탈세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조사 대상) 조사대상은 총 97명이며
 - 주요 선정유형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사회생활 초기로 주택 취득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연소자로서
 -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거나 부모가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 ①고가 아파트 취득자 40명, ②빌라(다세대·연립주택) 취득자 11명과
 - 운영하는 사업체의 소득을 탈루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고가의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사업자 등 46명입니다.

- (향후 계획) 국세청은 앞으로도 자금 여력이 없는 연소자의 주택 취득 등에 대하여 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철저히 부채사후관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1 착수 배경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¹⁾하고 다양한 방법²⁾으로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부동산 탈세 혐의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 1)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통한 거래동향 모니터링 등
 - 2) 등기부등본자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통보 탈세의심자료 등

- 최근 주택 시장 동향 파악 결과 주택 거래량은 ' 20.4분기를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 20대 이하의 취득 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 특히,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고가인 서울 지역에서 20대 이하 취득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 국세청은 소득자료 등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를 다각도로 활용하여 주택 거래관련 탈세혐의를 분석하고 있으며
 - 분석결과 대다수는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다만, 고가 아파트 단지와 최근 매수세 유입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등 거래과정에서
 - 경제활동 전이거나 사회생활 초기로 소득이 없거나 미미하여 자금여력이 부족한 20대 이하 연소자 중 일부가
 -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고도 증여세 등 적정한 세금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포착하였습니다.

- 또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와 탈루한 사업소득 또는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취득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도 다수 포착하였습니다.

- 이에 부모의 도움으로 부(富)를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탈루한 소득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고가 주택을 취득하는 등
 - 변칙적 부동산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2 조사대상자 97명

□ 이번 조사의 주요 선정 현황 및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가 아파트 등 취득자금 편법증여 혐의 연소자 40명

- 최근 아파트 시장은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20대 이하 연소자의 취



득 비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번 조사 대상은 소득이 미미한 연소자가 고가의 아파트 등을 취득하면서 증여세 신고 없이 부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거나
 - 임대 보증금을 승계하여 취득(일명 깡투자)하였으나 보증금 외의 매매대금을 부모가 지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 고가 아파트 취득 자금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40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소득이 전혀 없는 10대 후반의 연소자가 음식점을 창업하면서 ○억 원의 보증금과 창업자금 등을 부담하였으며 이듬 해 ○○억 원의 고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

- ○○○업체 대표로 고액 자산가인 아버지로부터 초기 창업자금 및 고가 주택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
- 창업자금 및 보증금, 주택 취득자금 수증 혐의 조사 예정

② 빌라 취득자금 편법증여 혐의 연소자 11명

- 최근 빌라(다세대·연립)는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¹⁾하고 가격 또한 상승²⁾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 1) 다세대·연립 주택 월별 매매건수(한국부동산원) ('21.1.) 17,338건 → ('21.2.) 17,929건 → ('21.3.) 20,111 → ('21.4.) 20,929 → ('21.5.) 22,551
 - 2) 한국부동산원 실거래 가격지수(연립·다세대 월별 매매): ('20.6.) 109.8 → ('20.9.) 109.5 → ('20.12.) 113.2 → ('21.3.) 114.8 → ('21.5.) 118.8
- 이는 아파트 가격상승과 매물 감소, 대출규제 등에 따라 빌라를 대체 취득하는 풍선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 국세청은 소득이 전혀 없는 10대~20대 초반의 연소자가 고액의 부채를 부담하거나 전세를 승계(깡투자)하면서 빌라를 취득한 경우 등을 확인하고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혐의가 있거나 다주택에 따른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11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20대 초반의 연소자가 개발 예정지역의 빌라를 ○억 원에 취득하면서 △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고 나머지 □억 원은 자기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하였으나

- 연간 소득이 자영업을 영위 중인 어머니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용근로소득 ○백만 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허위급여 혐의가 있어
- 고액연봉자인 아버지로부터 빌라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은 혐의
- 빌라 취득자금 수증 혐의 조사 예정

③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 부족자 46명

-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후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일부 아파트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수도권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거래동향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 명품 재건축 단지를 표방하며 아파트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주요 랜드마크 재건축 단지에서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내역을 파악하고 정밀 분석한 결과
 - 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거나,
 - ② 신고소득이 미미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탈루 소득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③ 법인의 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
 -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46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 주택임대 사업자가 주택 임대소득 및 비영업대금 이익을 신고 누락하고 신고소득이 미미한 배우자와 공동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
 - 수입금액 누락 및 배우자의 아파트 취득자금 수증 혐의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 예정
- ◇ 전문직 사업자가 신고 소득금액이 수년간 ○억 원에 불과함에도 재건축 추진 중인 고가 아파트를 소득이 전혀 없는 배우자와 ○○억 원에 공동으로 취득
 - 수입금액 누락 및 배우자의 아파트 취득자금 수증 혐의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 예정

3 조사방법

편법증여 여부 정밀 검증 및 부채사후관리

-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연소자의 경우 취득자금을 부모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정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금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 가장 차입금 여부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 보증금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보증금 외의 금액을 누가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증여 여부를 검증하는 한편,
 - 실제 부모가 취득하였음에도 연소자인 자녀 명의로 등기하였는지 여부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 또한, 조사과정에서 실제 차입금으로 인정된 부채의 경우 부채 자력변제 여부를 철저히 사후



관리하겠습니다.

- 부모 등 특수관계자와의 차입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은 물론 보증금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 차입금 상환 및 보증금 반환 시까지 부모가 대리변제 하는지 여부 등을 사후관리할 계획입니다.

사업소득 누락여부 철저 검증

- 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 신고내역을 면밀하게 검증하여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여부는 물론 부당한 회계처리를 통한 자금유출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4 향후 계획

- 국세청은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부동산 탈세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 최근 연소자의 주택 취득이 증가하고 있으며
 - 주택을 취득한 20대 이하자의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자금 능력이 부족하여 증여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이번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특히, 앞으로는 연소자가 일정금액 이상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자력 취득 여부 등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 또한,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등 기타 부동산은 물론 주식 등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대물림과 이 과정에서의 지능적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 특수관계자간 차입금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부채에 대하여는 차입금 완제 시까지 상환내역에 대해 철저히 사후관리할 계획입니다.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므로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 금융감독원, 2021. 8

【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요약 】

- ◆ (분석 결과)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비율은 '20회계연도에 97.0%로 新외감법 개정 후 계속 감소*했는데, 주기적 지정** 첫 시행에 따른 감사인 변경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하락세는 둔화
 - * 적정의견 비율(%): '16년 99.0 → '17년 98.5 → '18년 98.1 → '19년 97.2 → '20년 97.0
 - ** 감사인 지정회사: '19년 141사(모두 직권지정) → '20년 767사(주기적지정 222사, 직권지정 545사)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환경 불확실성* 및 감사인 변경에 따른 전기 재무제표 수정**이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상장법인이 대폭 증가
 - * 코로나19 영업환경 불확실성 강조사항 기재: '19년 19사 → '20년 369사 (350사↑)
 - ** 전기 재무제표 수정 강조사항 기재 : '19년 24사 → '20년 107사 (83사↑)
- 감사대상 상장법인 수 기준으로 4대 회계법인(Big4) 비중은 감소* 추세이나, 중견 회계법인(Top 10 중 하위 6사) 비중은 '20년에 크게 증가**
 - * '16년 47.3% → '17년 44.7% → '18년 42.7% → '19년 38.2% → '20년 31.0%
 - ** 중견 회계법인의 상장법인 감사비중: '19년 24.7% → '20년 36.0%(11.3%p↑)
- ◆ (시사점) 재무제표 신뢰성 및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행된 신규제도*가 급격한 시장변화를 수반하지 않고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 주기적 지정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외감법 과징금 도입, 표준감사시간제 등
 - ▷ 향후에도 신규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회계개혁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 감사인등록제, 주기적지정제 등 시행에 따른 감사인 재편 과정에서 중소형 상장법인의 Non-Big4 회계법인 선호 경향이 심화



⇒ 등록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등록요건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감사인 지정 시 감사품질요소 반영을 확대할 예정

I

개요

- (분석대상) 상장법인 2,364*사의 '20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하였으며, '19회계연도(이하 '전기') 대비 63사 증가
 - * '21.3월말 주권상장법인 2,437사 중 외국법인, 페이퍼컴퍼니 등 73사 제외
 - 분석대상 중 코스닥 상장법인이 1,447사(61.2%)로 가장 많고, 12월 결산(98.3%) 연결재무제표(77.0%) 작성 기업이 다수를 차지

II

분석결과

1 감사의견 현황

- ◆ **적정의견 비율은 97.0%*로 외감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15회계연도(99.4%) 이후 계속 감소했지만, 최근 하락세가 둔화**
 - *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법인은 71사(한정의견 6사+의견거절 65사)
 - 이는 **新외감법 시행으로 감사인 책임이 강화되어 엄격한 감사환경이 조성된 데 기인하며, 급격한 시장변화 없이 회계개혁이 안착되는 모습**
- (적정의견: 2,293사) 분석대상 상장법인의 97.0%(2,293사)가 적정의견이었으며, 전기(97.2%) 대비 소폭 하락(△0.2%p)
 - 최근 5년간 적정의견 비율*은 계속 감소했지만 하락세는 둔화
 - * 적정의견 비율(%): '16년 99.0 → '17년 98.5 → '18년 98.1 → '19년 97.2 → '20년 97.0
- (비적정의견: 71사)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법인은 71사(한정 6사, 의견거절 65사)로 전기(65사) 대비 6사 증가
 - 한정의견은 6사로 전기(7사) 대비 1사 감소하였고, 의견거절은 65사로 전기(58사) 대비 7사 증가
 - 특히 '20년 의견거절 상장법인은 '16회계연도 대비 55사 증가(10사 → 65사)하였으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비적정의견 사유*는 감사범위제한(63사), 계속기업 불확실성(32사) 順

* 한 기업의 비적정의견 사유가 여러 가지인 경우 중복하여 계산

최근 5년간 적정의견 비율 및 비적정의견 기업 수 추이

(단위: 사,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적정 (비율)	2,060 (99.0)	2,123 (98.5)	2,187 (98.1)	2,236 (97.2)	2,293 (97.0)
비적정	21	32	43	65	71
합 계	2,081	2,155	2,230	2,301	2,364

□ (시장별 분포) 코스닥 시장은 전기와 유사한 수준(96.4% → 96.5%)인 반면, 유가증권·코넥스 시장의 적정의견 비율은 전기 대비 하락*

* 유가증권: '19년 99.1% → 20년 98.7%(△0.4%p), 코넥스: '19년 93.9% → '20년 92.1%(△1.8%p)

시장 유형별 외부감사의견 현황

(단위: 사, %, %p)

구 분	2019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					증감	
	유가 증권	코스닥	코넥스	합계	비율	유가 증권	코스닥	코넥스	합계	비율	합계	비율
적정 (비율)	768 (99.1)	1,330 (96.4)	138 (93.9)	2,236	97.2	768 (98.7)	1,397 (96.5)	128 (92.1)	2,293	97.0	57	△0.2
비적정	7	49	9	65	2.8	10	50	11	71	3.0	6	0.2
한정 의견 거절	-	6	1	7	0.3	2	4	-	6	0.3	△1	-
합 계	775	1,379	147	2,301	100.0	778	1,447	139	2,364	100.0	63	-

□ (감사계약 유형별 분포) 감사인 지정기업*의 적정의견 비율(92.8%)은 자유수입 기업의 적정 비율(99.0%)보다 6.2%p 낮은 수준

* 감독당국은 상장예정, 관리종목 편입 등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기업의 감사인을 지정

○ 지정기업은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감사위험이 높은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적정의견 비율이 자유수입기업보다 현저히 낮았으나, '20년에는 그 차이*가 감소

* 적정의견 비율차이[(자유 - 지정), %p]: '16년 4.3 → '17년 6.6 → '18년 9.9 → '19년 15.1 → '20년 6.2

- '20년부터 주기적지정이 본격 시행되어 비교적 재무상황이 우량하고 감사위험이 높지 않은 지정기업이 다수 포함된 데 기인

최근 5년간 감사인 선임방법별 적정의견 비율

(단위: 사,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지정	기업	183	171	232	141	767
	적정의견비율	95.1	92.4	89.2	83.0	92.8
자유수입	기업	1,898	1,984	1,998	2,160	1,597
	적정의견비율	99.4	99.0	99.1	98.1	99.0

- (자산규모별 분포)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이 93.9%로 가장 낮음(자산 1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의 경우 98.8~100%)
 -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 비적정의견이 많은 것으로 추정

2020회계연도 자산규모별 적정의견 비율

(단위: 사, %)

구분	1천억원 미만		1천억 ~5천억원		5천억 ~2조원		2조원 이상		합 계	
	사	비율	사	비율	사	비율	사	비율	사	비율
적정	884	93.9	970	98.8	268	99.2	171	100	2,293	97.0
한정	1	0.1	4	0.4	1	0.4	-	-	6	0.3
의견거절	56	6.0	8	0.8	1	0.4	-	-	65	2.7
합계	941	100	982	100	270	100	171	100	2,364	100

2 강조사항 등 유의사항 기재 현황

- (강조사항*)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이 기재된 상장법인은 630사로 전기(250사) 대비 큰 폭으로 증가(380사↑)
 - * 감사의견에 영향은 없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사항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업환경의 불확실성이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상장법인(369사)이 전기(19사) 대비 대폭 증가(350사↑)
 - 감사인 변경* 증가('19년 611사 → '20년 1,021사)로 인해 전기 재무제표 수정이 강조사

향으로 기재된 상장법인(107사)도 크게 증가(83사↑)

* 주기적지정 시행에 따른 지정회사 수 증가('19년 141사 → '20년 767사)와 상장법인
감사인등록제 시행에 따른 미등록 회계법인 교체로 인해 '20년 감사인 변경이 증가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 문단에 기재된 주요 내용

(단위: 건, 사)

항목별 구분	2019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	증 감
소송 등 영업환경의 중대한 불확실성	42	402	360
코로나 19 영향	19	369	350
회계 변경	50	132	82
전기 재무제표 수정	24	107	83
특수관계자 등 중요한 거래	121	121	-
합병 등 영업환경·지배구조 변화	66	81	15
기타(신규상장, 관리종목 관련, 내부회계관리 제도 등)	77	72	△5
강조사항 합계	356	808	452
기재기업 수	250	630	380

- (계속기업 불확실성) 적정의견 기업(2,293사) 중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은 105사(4.6%)로 전기(84사, 3.8%) 대비 증가(+24사, +0.8%p)
 - 전기 적정의견 &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기업의 당기('20년) 이후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 비율(17.9%)은 미기재기업(1.7%)보다 11배 높음

3 감사인 분포

- ◆ 감사대상 상장법인 수 기준으로 4대 회계법인(Big4)의 비중은 감소 추세('16년 47.3%→ '20년 31.0%, 16.3%p↓)이나, 중견 회계법인(Top 10 중 하위 6사)의 비중은 '20년에 크게 증가('19년 24.7%→ '20년 36.0%, 11.3%p↑)
 - 특히 자산 5천억원 미만 중소형 상장법인에 대한 Big4의 감사비중이 전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19년 28.4%→ '20년 20.4%, 8.0%p↓)

- (Big4 집중도) Big4*는 상장법인 2,364사 중 734사(31.0%)를 감사했는데, 그 비중은 전기(38.2%) 대비 감소(△7.2%p)

* 소속 공인회계사 수, 매출규모, 총감사회사 수 등 규모기준 상위 4개사(삼일, 삼정, 한영,

안진)

- 최근 5년간 Big4의 상장법인 감사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5년간 누적 감소율*은 16.3%p에 이릅니다

* 최근 5년간 상장법인 수는 283사 증가하였으나, Big4의 감사대상회사 수는 250사 감소

최근 5년간 Big4의 감사대상 상장법인 수와 감사비중

(단위: 사, %, %p)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Big4	984	963	953	879	734
분석대상 전체	2,081	2,155	2,230	2,301	2,364
Big4 비중 (증감)	47.3 (△3.2)	44.7 (△2.6)	42.7 (△2.0)	38.2 (△4.5)	31.0 (△7.2)

- 중견 회계법인(Top 10 중 하위 6사)의 상장법인 감사비중은 36.0%로 전기(24.7%) 대비 대폭 증가(+11.3%p)
 - 감사인등록제 시행에 따른 감사인 재편 과정에서 중소형 상장법인의 Non-Big4 회계법인 선호 경향이 심화된 것으로 추정

감사대상회사 수 기준 회계법인 감사비중

(단위: 사, %, %p)

구 분	2019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					증감	
	유가 증권	코스닥	코넥스	합계	비율	유가 증권	코스닥	코넥스	합계	비율	합계	비율
Big4 (비중)	485 (62.6)	368 (26.7)	26 (17.7)	879	38.2	437 (56.2)	283 (19.6)	14 (10.1)	734	31.0	△145	△7.2
중견 회계법인 (비중)	113 (14.6)	412 (29.9)	43 (29.3)	568	24.7	185 (23.8)	610 (42.2)	57 (41.0)	852	36.0	284	11.3
기타 회계법인	177	599	78	854	37.1	156	554	68	778	33.0	△76	△4.1
합 계	775	1,379	147	2,301		778	1,447	139	2,364		63	

- (시가총액 비중) 상장법인 시가총액은 2,278조원으로 전기(1,649조원) 대비 629조원(38.1%) 증가하였는데,
 - Big4가 감사한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1,934조원(84.9%)으로, 그 비중이 전기(87.8%) 대비 2.9%p 감소
 - 감사대상 상장법인의 시가총액 기준 Big4 비중은 최근 5년간 계속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Big4의 감사품질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큼

최근 5년간 Big4가 감사한 상장법인의 시가총액 및 비중

(단위: 조원, %, %p)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Big4	1394	1,644	1,409	1,447	1,934
분석대상전체	1,542	1,842	1,600	1,649	2,278
Big4 비중 (증감)	90.4 (+1.0)	89.2 (△1.2)	88.1 (△1.1)	87.8 (△0.3)	84.9 (△2.9)

- (자산규모 비중) Big4가 감사한 자산 2조원 이상 및 5천억~2조원 미만 대형 상장법인 비중은 각각 94.7% 및 66.3%인 반면
- 자산 1천억~5천억원 및 1천억원 미만 중·소형 상장법인 비중은 각각 26.8% 및 13.8%에 불과
 - ⇒ 5천억원 미만 중·소형 상장법인일수록 Non-Big4 회계법인을 선호하는 경향 심화*
 - * 자산 5천억원 미만 상장법인의 Non-Big4 회계법인 선임비중: '19년 71.6% → '20년 79.6%

회계법인의 자산규모별 감사대상 상장법인 수와 감사비중

(단위: 사, %)

구 분	2019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					
	Big4		Non-Big4		합 계		Big4		Non-Big4		합 계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2조원 이상	161	95.8	7	4.2	168	100.0	162	94.7	9	5.3	171	100.0
5천억~2조원	182	74.0	64	26.0	246	100.0	179	66.3	91	33.7	270	100.0
1천억~5천억원	358	37.5	597	62.5	955	100.0	263	26.8	719	73.2	982	100.0
1천억원 미만	178	19.1	754	80.9	932	100.0	130	13.8	811	86.2	941	100.0
합 계	879		1,422		2,301		734		1,630		2,364	

III 시사점

- ㉠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 하락세가 둔화되는 모습
- 적정의견 비율은 新외감법 개정 후 계속 감소*했는데, 주기적지정** 등 감사인 변경에도 불구하고 최근 하락세는 둔화
 - * 적정의견 비율(%): '16년 99.0 → '17년 98.5 → '18년 98.1 → '19년 97.2 → '20년 97.0
 - ** 감사인 지정: '19년 141사(모두 직권지정) → '20년 767사(주기적지정 222사, 직권지정 545사)



- 재무제표 신뢰성 및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행된 신규제도*가 급격한 시장변화를 수반하지 않고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 주기적 지정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외감법 과징금 도입, 표준감사시간제 등
- 향후에도 신규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회계개혁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② 감사보고서 강조사항에 유의할 필요

- 외부감사인이 이용자의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을 기재한 회사가 '20년에 대폭 증가'
 - * '19년 250사 356건(1사당 평균 1.28건) → '20년 630사 808건(1사당 평균 1.42건)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환경 불확실성 및 감사인 변경에 따른 전기 재무제표 수정이 강조사항으로 다수 기재*
 - * 영업환경 불확실성 강조사항 기재: '19년 19사 → '20년 369사(+350사)
 - 전기 재무제표 수정 강조사항 기재: '19년 24사 → '20년 107사(+83사)
- 감사보고서 이용자들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감사인이 기재한 강조사항에 유의할 필요

③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기재사항에 유의할 필요

-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계속기업 영위가 불확실하다고 기재된 회사가 '20년에 크게 증가'
 - * '16년 81사 → '17년 84사 → '18년 85사 → '19년 84사 → '20년 105사
-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은 적정의견을 받았더라도 재무상황 및 영업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향후 상장폐지되거나 비적정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할 필요
 - * 차기 이후에 상장폐지되거나 비적정의견을 받은 비율이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되지 않은 기업보다 약 11배 높음

④ 중소형 상장법인일수록 Non-Big4 회계법인 선호

- Big4의 감사대상 상장법인 수는 감소* 추세이며, 중견 회계법인(Top 10 중 하위 6사)의 경우 전기보다 크게 증가**
 - * '16년 984사 → '17년 963사 → '18년 953사 → '19년 879사 → '20년 734사 (16.5%↓)
 - ** 중견 회계법인(대주, 삼덕, 신한, 한울, 우리, 이촌): '19년 568사 → '20년 852사(50%↑)
- 감사인등록제* 시행에 따른 감사인 재편 과정에서 중소형 상장법인의 Non-Big4 회계법인 선호 경향이 심화**
 - *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사전에 감독당국에 등록한 회계법인(40개)만 상장법인 감사를 수행
 - ** 자산 5천억원 미만 상장법인의 Non-Big4 회계법인 선임비중: '19년 71.6% → '20년 79.6%
- 등록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등록요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감사인 지정 시 감사품질요소 반응을 확대할 예정

붙임 1 - 감사보고서의 개요

1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記述)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아래 기한까지 기업·증선위·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해야 함

〈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제출대상	제출기한
기업	정기주주총회 1주 전
증선위 및 공인회계사회*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2주 이내

* 기업이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하면, 감사인이 증선위·공인회계사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新외감법 §23)

2 감사의견

가. 감사의견

- (종류) 감사범위 제한 여부, 회계처리기준 위배 여부, 계속기업으로 존속가능성 등에 따라 적정한정부적정의견, 의견거절로 구분

구 분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input type="checkbox"/> 감사범위 제한 • 경미 • 중요 • 특히 중요	○	○2)		○3)
<input type="checkbox"/> 회계처리기준의 위배 • 경미 • 중요 • 특히 중요	○	○2)	○3)	
<input type="checkbox"/> 계속기업 가정 • 타당하나 중요한 불확실성 존재 - 적절하게 공시 - 부적절하게 공시 • 타당하지 않음	○1)	○2)	○3) ○4)	

주: 1) 재무제표 주석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별도단락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기재(감사기준서 570 문단 22)

2) 그 영향이 중요하나 전반적이지는 않은 경우(감사기준서 705 문단 7, 감사기준서 570 문단 23)



3) 그 영향이 중요하며 전반적임(감사기준서 705 문단 8~9, 감사기준서 570 문단 23)

4)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계속기업 가정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사기준서 570 문단 21)

- ① (적정의견)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할 때 표명하는 의견
- ② (한정의견)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불일치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영향이 중요하므로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 부적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의견 표명을 거절하여야 할 정도로는 중요하지 않거나 전반적이지 않을 때 표명하는 의견
- ③ (부적정의견)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불일치로 인한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인 경우 표명하는 의견
- ④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획득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판단이 불가능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음

나. 강조사항

- 감사의견에 영향은 없지만,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표시·공시된 사항을 이해하는 데 근본이 될 정도로 중요하여, 감사인이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 감사보고서에 언급하는 사항
 - * (예) 회계변경, 중요 거래(특수관계자 거래 등), 중대한 불확실성(소송 등) 등

다. 계속기업 불확실성

- 기업의 존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발생 시, 그 내용이 적절히 공시되었는지에 대해 감사인이 평가
 - 중요한 불확실성이 없고 계속기업 가정이 유효한 경우 기업은 관련 사실을 주석에 공시하고, 감사인은 그 적정성을 평가
 -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계속기업 가정에 의문이 있을 때 기업은 관련 사실을 주석에 공시하고 감사인은 별도단락에 기재

라. 핵심감사사항

- 감사인은 감사위원회 등 기업의 내부감시기구와 협의하여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감사보고서에 선정 이유, 감사인이 수행한 절차 및 그 결과를 기술

붙임 2 - 참고 통계자료

1 분석대상 상장법인

가. 시장별 분포

(단위: 사)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유가증권	741	758	769	775	778
코스닥	1,199	1,249	1,311	1,379	1,447
코넥스	141	148	150	147	139
합 계	2,081	2,155	2,230	2,301	2,364

나. 결산월별 분포

(단위: 사,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12월	2,039	2,116	2,191	2,260	2,323
(비율)	(98.0)	(98.2)	(98.3)	(98.2)	(98.3)
3월	21	19	20	20	19
6월	13	12	11	13	14
기타	8	8	8	8	8
합 계	2,081	2,155	2,230	2,301	2,364

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단위: 사,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결	1,517	1,610	1,684	1,758	1,820
(비율)	(72.9)	(74.7)	(75.5)	(76.4)	(77.0)
개별	564	545	546	543	544
합 계	2,081	2,155	2,230	2,301	2,364

2 감사의견

가. 감사의견 현황

(단위: 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적정	2,060	2,123	2,187	2,236	2,293
한정	11	7	8	7	6
부적정	-	-	-	-	-
의견거절	10	25	35	58	65
합계	2,081	2,155	2,230	2,301	2,364

나. 시장별 감사의견 적정/비적정 현황

(단위: 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적정	비적정								
유가증권	738	3	754	4	763	6	768	7	768	10
코스닥	1,184	15	1,228	21	1,280	31	1,330	49	1,397	50
코넥스	138	3	141	7	144	6	138	9	128	11
합계	2,060	21	2,123	32	2,187	43	2,236	65	2,293	71

다. 감사수입 방법별 감사의견 적정/비적정 현황

(단위: 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적정	비적정								
자유수입	1,886	12	1,965	19	1,980	18	2,119	41	1,581	16
감사인지정	174	9	158	13	207	25	117	24	712	55
합계	2,060	21	2,123	32	2,187	43	2,236	65	2,293	71

라. 자산규모별 감사의견 적정/비적정 현황

(단위: 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적정	비적정								
2조원 이상	190	1	200	-	209	1	168	-	171	-
5천억 ~ 2조원	273	-	297	2	307	-	246	-	268	2
1천억 ~ 5천억원	770	5	819	11	874	16	943	12	970	12
1천억원 미만	827	14	807	19	797	26	879	53	884	57
합계	2,060	20*	2,123	32	2,187	43	2,236	65	2,293	71

* 1개사는 재무제표가 미첨부 되어 현황통계에서 제외

새로운 보험회계기준(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시행 준비,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활용하세요."

- 금융감독원, 2021. 8

- ◆ 금융감독원은 '23년부터 시행되는 新 보험회계기준(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의 도입영향이 충실히 공시될 수 있도록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마련·배포
- 보험회사는 동 사례를 활용하여 재무제표, 홈페이지 등에 주요 회계정책 변경, 도입준비 상황 및 재무영향 등을 분기별 공시
- ➔ 이해관계자들이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 등을 손쉽게 사전 파악함으로써 회사와의 정보비대칭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

I 배경

- '21.6월 K-IFRS 제1117호가 제정·공표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新 회계기준관련 도입준비상황 및 재무영향 등을 공시할 의무(보험업법, 외감법 등)
-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일관되고 충실한 공시를 유도하고, 공시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고자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마련·배포

[보험회사의 사전공시 의무]

- ① (재무제표 주식공시) 시행일 전에 新 회계기준의 도입영향을 공시 (외부감사법)
- ② (경영공시, 홈페이지 공시) 新 회계기준 도입 준비상황 및 영향분석 등을 공시 (보험업법 등)

재무제표 주식공시 (전자공시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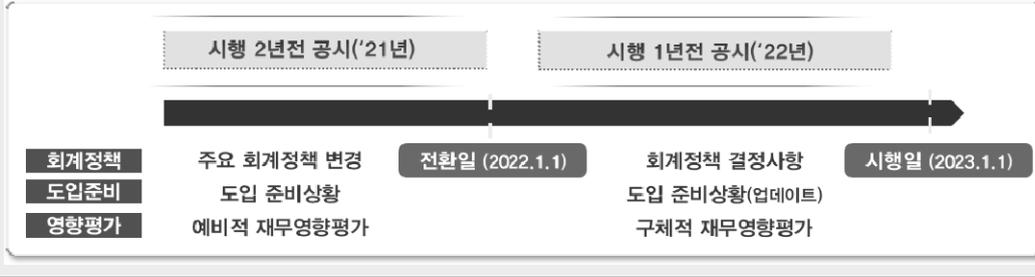
- 근거 : 외부감사법 (K-IFRS 제1008호)
- ➔ 재무정보이용자에 목적적합 정보제공

경영공시 (보험회사 홈페이지 등)

- 근거 : 보험업 감독규정 제7-44조 등
- ➔ 보험계약자의 권리 보호 등

II 사전공시 주요 내용

- ◆ 新 회계기준 도입준비 상황, 주요 영향정보 등을 시점별로 단계적 공시
- ※ '23년 시행일에 가까워질수록 정보의 구체성이 높아짐 (회사 상황, 특성에 맞게 공시)



1 주요 회계정책 변경

□ 보험회사는 新 기준서 적용에 따른 회계정책 변경사항* 등을 사전공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사의 재무수치 변동가능성 등을 예고

* 부채측정 : (현행) 원가기준 → (변경) 현행가치, 수익인식 : (현행) 현금주의 → (변경) 발생주의

① ('21년) '23년부터 달라지는 회계정책의 주요내용* 등

* 재무제표에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회계정책 위주로 기재, K-IFRS 제1117호 도입에 따라 새로이 신설되는 계정과목(예 : 보험계약마진 등) 설명

② ('22년) 회사가 적용할 회계정책과 기존 회계정책 간의 주요 차이점 등

【 '주요 회계정책 변경' 관련 사전공시 모범사례 (요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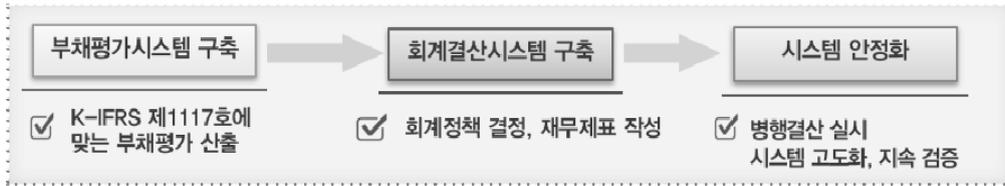
▶ ('21년) K-IFRS 제1104호에서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 등)를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는 반면, K-IFRS 제1117호에서는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측정합니다.		
▶ ('22년) ◇◇보험회사가 K-IFRS 제1117호 적용시 사용할 보험부채 평가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생명보험계약 등에 대해서는 일반모형을,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공시 시점	K-IFRS 제1104호	K-IFRS 제1117호
'21년	· 과거 정보(판매시점의 금리 등)를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원가 측정	· 현재시점(보고시점)의 정보를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측정
'22년	상동	· 회사가 선택한 회계정책 (예시) 보험부채 평가모형 : 일반모형, 변동수수료접근법 등

2 도입 준비상황

- 新 기준서 적용을 위해서는 결산시스템 구축, 임직원 교육 등이 수반되며, 보험회사는 이와 관련된 준비상황 및 향후 계획을 사전 공시

【 K-IFRS 제1117호 관련 결산시스템 구축과정 (일반적 경우)】

- 회사는 보험부채가액을 산출하는 부채평가시스템, 이를 결산업무로 연결하는 회계결산시스템을 구축한 후, 검증작업 등을 통해 시스템 안정화 작업 진행



- ① ('21년) 도입추진팀 구성, 결산시스템 구축현황, 관련 교육실시 내역, 경영진 보고현황 등 제반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
- ② ('22년) '21년 기재한 추진계획의 이행여부, 추가 준비상황 등

【 '도입 준비상황' 관련 사전공시 모범사례 (요약) 】

- ▶ ('21년) ◇◇보험회사는 K-IFRS 제1117호 도입 준비를 위해 2017년 2월부터 별도의 도입추진팀을 구성하여 2020년 11월 통합 회계결산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현재 동 시스템을 시범운영하며 시스템 값 산출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 또한, K-IFRS 제1117호 관련 사내교육과정을 신설하여, 회계·계리·상품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대내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이사회 및 경영진에 도입 준비상황 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도입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활동	준비상황 (보고시점 기준)	향후 추진계획
도입추진팀 구성	· '17.2월 IFRS17 도입추진팀 구성 (현재 총 0명의 전담인력)	· 도입추진팀 지속 운영 · 전담인력 보강 등
결산시스템 구축	· '17.3월 시스템 구축 용역의뢰 · 시스템 개발 완료, 시범운영 중	· 시스템 고도화 (병행결산)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임직원 교육	· 실무자 교육과정 마련 및 실시	· 교육과정 증설 등
경영진 보고	· 시스템 구축, 재무영향 등 보고	· 병행결산 관련 제반사항 보고

- ▶ ('22년) '21년 사전공시 내용을 업데이트

3 주요 재무영향 분석결과

□ 보험회사는 新 기준서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단계적으로 사전 공시함으로써 회계기준 변동으로 인한 이해관계자 등의 혼란을 최소화

① ('21년) 예비적 재무영향평가

회계기준 변경 영향을 받는 주요 계정 잔액 등

② ('22년) 구체적 재무영향평가*, 주요 계정별 재무수치 증감 등

* 회사의 병행결산 부담 등을 감안하여 '22년 말 시점에 기재 '22년 말 전에 신뢰성 있는 영향평가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경우 '22년 말 전에도 기재가능
 '23년 K-IFRS 제1109호(금융상품)를 동시 적용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재무영향분석을 통합하여 공시하고, 제1109호의 영향이 큰 경우에는 既 발표된 보도자료(新 IFRS 시행 준비, “금감원 모범사례를 활용하세요.”('17.1.3.))를 참고하여 세부적인 계정 영향 등을 별도 공시

【 '주요 재무영향 분석결과' 관련 사전공시 모범사례 (요약) 】

▶ ('21년) 예상되는 재무영향 방향성, 영향을 받는 주요 계정잔액
 ◇◇보험회사가 2021. 12. 31. 현재 입수 가능한 정보 등에 기초하여 K-IFRS 제1117호 적용이 2021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한 결과, 보유중인 고금리 확정계약 등의 영향으로 K-IFRS 제1117호 시행 이후 보험계약부채 평가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 12. 31. 현재 총 OO백만원의 보험계약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22년) 구체적인 재무수치 증감, 중요 계정과목별 예상수치
 ◇◇보험회사가 2022년 재무제표에 대해 K-IFRS 제1117호를 적용할 경우 2022. 12. 31. 기준 자산, 부채, 자본은 각각 OO백만원...이며, 이는 K-IFRS 제1104호 대비 OO백만원... 증가(감소)한 수치입니다.
 K-IFRS 제1117호 적용시 2022. 12. 31. 기준 보험계약부채는 OO백만원이며, 동 보험계약부채에 포함된 보험계약마진은 OO백만원입니다.

K-IFRS 제1104호와 제1117호 간 재무수치 변동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K-IFRS 제1104호(A)	K-IFRS 제1117호(B)	증감(B-A)
자산	XX	XX	XX
부채	XX	XX	XX
자본	XX	XX	XX
....	XX	XX	XX

☞ 그 밖의 주요 회계기준 변경사항별 예시는 붙임 「사전공시 모범사례」 참조

III 기대효과

- 금번 「사전공시 모범사례」의 마련·배포로 보험회사의 공시작성 편의가 도모되고, 보험회사 간 사전공시 내용의 비교가능성이 제고
- 이해관계자는 공시내용을 통해 보험회사별 회계기준 도입효과를 사전 파악함으로써 회사와의 정보비대칭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

IV 향후 계획

- ① 보험회사의 충실한 공시의무 이행을 유도
 - 생명·손해보험협회, 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안내하여 보험회사, 회계법인, 투자자 등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② 보험회사의 도입준비 현황, 사전공시 사항 등을 지속 점검
 - 보험회사별 회계결산시스템 구축현황, 사전공시 의무 이행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여 新 기준서의 연착륙을 도모
- ③ 新 기준서 체계에 맞도록 관련 법규·제도정비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통해 보험감독회계 등 관련 법규 개정을 조속히 마련 및 전파할 계획
 -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KDI, 보험개발원, 금융·자본·보험연구원, 보험학계,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으로 구성 ('18.11월부터 운영)

붙임 - K-IFRS 제1117호'보험계약'관련 사전공시 모범사례

※ '주석공시 모범사례' 2021-2로 활용계획

사전공시 모범사례의 성격

- ▣ 보험회사의 사전공시 작성 편의를 도모하고 재무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참고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K-IFRS 제1117호에서 정한 모든 공시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는 모범사례에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야 함



- ▣ 사전공시 모범사례가 제시하는 양식 및 기재범위는 회사 합리적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회사는 사전공시 작성시 재무정보이용자의 정보이용 효익과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 등 회사의 실정을 고려하여 공시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축소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

1. 주요 회계정책 변경사항

202X년 XX월 XX일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4월 23일 제정된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기준서는 현행 K-IFRS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K-IFRS 제1117호의 주요 특징은 보험부채의 현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입니다. 즉, 현행 K-IFRS 제1104호에서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 등)를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회사가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현금주의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 간 구분표시 의무가 없었습니다. 반면, K-IFRS 제1117호에서는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현행가치로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표시하게 됩니다.

보험회사가 K-IFRS 제1117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향후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부채 등의 평가)

K-IFRS 제1117호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 등을 측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보험회사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식별한 후 동 포트폴리오 내에서 수익성이 유사한 계약 등으로 보험계약집합을 구분합니다. 이후 보험계약집합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보험계약대출 관련 현금흐름 포함, 화폐의 시간가치 등 반영),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됩니다. K-IFRS 제1117호 도입에 따라 보험계약마진 계정이 새로 도입되는데, 이는 미래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의미합니다.

한편, 재보험계약은 재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원수 보험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등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한 보험계약을 의미하며, 출재된 보험계약집합도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원수보험계약집합과 일관된 가정을 적용합니다.

(재무성과의 인식 및 측정)

K-IFRS 제1117호에 따르면,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며,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 등)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집합 관련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이들의 변동효과를 보험 금융손익에 포함하며,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손익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할지에 대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전환 관련 회계정책)

K-IFRS 제1117호 경과규정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전환일(2022.1.1.,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보고기간의 기초시점)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험회사는 전환일 이전에도 K-IFRS 제1117호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계약집합을 식별인식측정(완전소급법)하여야 하지만, 동 방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완전소급법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정소급법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완전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며, 공정가치법은 K-IFRS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 등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등은 전환일의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정합니다.

【 '주요 회계정책 변경' 관련 시점별 추가기재사항 (예시 : 보험부채 평가방법) 】

▶ ('21년)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 변경

K-IFRS 제1104호에서는 과거 정보를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여 왔으나, K-IFRS 제1117호에서는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측정합니다. 또한 전환일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선택)하여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구분	K-IFRS 제1104호	K-IFRS 제1117호
보험부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정보를 이용하여 원가로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고시점의 정보를 이용하여 현행가치로 측정 전환일 시점에 과거 보험계약집합을 현행가치로 조정하는 전환방법 선택 필요 (완전/수정소급법, 공정가치법 중 적용)
...
...

▶ ('22년) 'K-IFRS 제1117호 시행 이후 실제 적용할 회계정책 등' 위주

◇◇보험회사는 K-IFRS 제1117호에서는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측정하게 되며, 이 때 사용하게 될 평가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일반 생명보험계약 등에 대해서는 일반모형을 적용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초 인식시점에서 보험계약 보장기간이 1년 이하인 일반손해보험계약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환일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과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구분	K-IFRS 제1104호	K-IFRS 제1117호
보험부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정보를 이용하여 원가로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고시점의 정보를 이용하여 현행가치로 측정 평가모형 : 일반모형, 변동수수료 접근법, 보험료배분접근법 회사는 과거 보험계약집합의 전환방법으로 완전소급법, 공정가치법을 선택 적용
...
...

※ 상기 사례를 참고하여, 재무제표에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회계정책들을 위주로 공시내용 기재

2. 도입준비상황

보험회사가 K-IFRS 제1117호를 원활히 도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도입추진팀 구성, 회계결산시스템 구축, 임직원 교육, 재무영향분석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보험부채 평가의 적정성을 위해 회계결산 시스템의 안정성, 시스템 산출값의 정합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회계정책, 계리적 가정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매 기간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한편, 여러 내부통제장치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新 회계기준 시행 이후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가 작성·공시될 수 있도록 회사는 변화된 회계환경에 맞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K-IFRS 제1117호의 도입은 단순히 회계기준의 변경에 그치지 않고 보험상품 개발, 판매 전략, 장기 경영전략 등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에, 회사는 新 회계기준 시행 이후 여러 경영 전략 등을 재수립하는 한편, 관련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경영진에게 도입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도입 준비상황' 관련 시점별 추가기재사항 (예시) 】

▶ ('21년) ◇◇보험회사는 K-IFRS 제1117호 도입 준비를 위해 2017년 2월부터 0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도입추진팀을 구성 및 운영하여 왔습니다.
2017년 3월 회계·계리법인 등에 부채평가시스템 등 결산시스템의 구축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2020년 11월 통합 회계결산시스템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현재 시스템을 시범운영하며 정합성 검증을 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전반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K-IFRS 제1117호 관련 사내교육과정을 신설하여, 회계·계리·상품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대내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2022년에는 심화 교육과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2021년 중 이사회 및 경영진에 도입 준비상황 등을 0회 보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도입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활동	준비상황 (보고시점 기준)	향후 추진계획
도입추진팀 구성	· '17.2월 IFRS17 도입추진팀 구성 (현재 총 0명의 전담인력)	· 도입추진팀 지속 운영. · 전담인력 인력 보강 등
결산시스템 구축	· '17.3월 시스템 구축 용역의뢰 · 시스템 개발 완료, 시범운영 중	· 시스템 고도화 (병행결산)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임직원 교육	· 실무자 교육과정 마련 및 실시	· 교육과정 증설, 심화과정 신설
경영진 보고	· 시스템 구축, 재무영향 등 보고	· 병행결산 관련 제반사항 보고

▶ ('22년) '21년 사전공시 내용을 업데이트

3. 재무영향평가

K-IFRS 제1117호 시행으로 부채의 평가방법, 수익인식방법 등이 변경됨에 따라 2023년 재무제표의 경우 재무수치 변동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K-IFRS 제1109호(금융상품)가 제1117호와 함께 동시에 최초 적용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전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수치 등에는 제1109호의 영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3년 K-IFRS 제1117호(보험계약)와 제1109호(금융상품) 동시 최초적용 관련]

- IASB는 보험회사가 IFRS17보다 IFRS9을 우선 적용하는 경우, 자산·부채간 회계불일치 우려 등이 있어 IFRS9 적용을 IFRS17 시행일까지 한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
- 재무영향은 제1117호, 제1109호를 통합하여 공시하고, 제1109호의 영향이 큰 경우에는 세부적인 계정 영향 등을 별도 공시
(제1109호 사전공시 : 보도자료('17.1.3.) 新 IFRS 시행 준비, “금감원 모범사례를 활용하세요.” 참고)

2021년의 경우 지속적인 시스템 정합성 검증, 2022년 병행결산 준비 등의 작업이 수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2021년에는 K-IFRS 제1117호 시행에 따른 예비적·잠재적 영향(예시 : 재무변동의 방향성, 평가방법이 변경되는 보험부채(자산)가액 등)을 공시하고 2022년 연간 재무제표에 구체적인 재무영향 결과를 공시하였습니다.

【 '주요 재무영향 분석결과' 관련 시점별 추가기재사항 (예시) 】

▶ ('21년) 예비적, 잠재적 재무영향평가 결

◇◇보험회사가 2021. 12. 31. 현재 입수 가능한 정보 등에 기초하여 K-IFRS 제1117호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한 결과, 보유중인 고금리 확정계약 등의 영향으로 K-IFRS 제1117호 시행 이후 보험계약부채 평가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 12. 31. 현재 총 OO백만원의 규모의 보험계약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K-IFRS 제1117호를 적용할 경우 보험수익에서 저축성 보험료 등이 제외됨에 따라 보험수익의 감소가 예상되며, 2021년 기준 보험수익에서 저축성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OO%(OO백만원)입니다.

※ 회사의 상황에 맞게 예비적, 잠재적 재무영향평가를 추가 분석, 공시

▶ ('22년) 구체적 재무영향평가 결과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수치 변동

◇◇보험회사가 2022. 12. 31. 현재 구축된 결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2022년 재무제표에 대해 K-IFRS 제1117호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K-IFRS 제1117호를 적용할 경우 2022. 12. 31. 기준 자산, 부채, 자본은 각각 OO백만원, OO백만원, OO백만원, 당기손익과 총포괄손익은 각각 OO백만원, OO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K-IFRS 제1104호 대비 자산, 부채, 자본이 각각 OO백만원, OO백만원, OO백만원 증가(감소), 당기손익과 총포괄손익은 각각 OO백만원, OO백만원 증가(감소)한 수치입니다.

동 분석결과는 향후 이용할 수 있는 추가정보 및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K-IFRS 제1104호(A)1)	계정과목	K-IFRS 제1117호(B)2)	증감(B-A)
자산총계	xx	자산총계	xx	xx
금융자산	xx	보험계약자산	xx	
재보험자산	xx	재보험계약자산	xx	
...	xx	...	xx	
부채총계	xx	부채총계	xx	xx
보험계약부채	xx	보험계약부채	xx	
금융부채	xx	재보험계약부채	xx	
...	xx	...	xx	
자본총계	xx	자본총계	xx	xx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K-IFRS 제1104호1)	계정과목	K-IFRS 제1117호(B)2)	증감(B-A)
영업수익	xx	보험수익	xx	
보험료수익	xx	예상보험금 및 사업비	xx	
투자수익	xx	...	xx	
...		...	xx	
영업비용	xx	보험서비스비용	xx	
보험부채전입액	xx	실제보험금 및 사업비	xx	
지급보험금	xx	...	xx	
사업비	xx	...	xx	
신계약비상각액	xx	보험서비스결과	xx	
...	xx	투자손익	xx	
...	xx	투자수익	xx	
		투자비용	xx	
영업손익	xx	영업손익	xx	xx
영업외수익	xx	영업외수익	xx	
영업외비용	xx	영업외비용	xx	
당기손익	xx	당기손익	xx	xx
기타포괄손익	xx	기타포괄손익	xx	
총포괄손익	xx	총포괄손익	xx	xx

〈현금흐름표〉

(단위: 백만원)

구분	K-IFRS 제1104호(A)1)	K-IFRS 제1117호(B)2)	증감(B-A)
영업활동 현금흐름	xx	xx	xx
투자활동 현금흐름	xx	xx	xx
재무활동 현금흐름	xx	xx	xx

주 1) K-IFRS 제1104호 '보험계약'과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적용한 금액
(23년 전에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을 도입한 회사는 제1104호와 제1109호를 적용한 금액)

2)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과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을' 동시 적용한 금액

㉔ K-IFRS 제1117호로의 전환방법에 따른 재무영향

◇◇보험회사는 전환일(2022.1.1.) 기준 직전 5년 이내(2017년~2021년) 발행된 보험계약 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을, 전환일 기준 5년 전(2016년 이전) 발행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부채의 평가액을 원가에서 현행가치로 조정하였습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보험계약의 공정가치(K-IFRS 제1113호)는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의해 산출되는 보험계약부채 평가액을 토대로 일부 조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전환회계처리 관련 재무영향을 분석한 결과, 2022.1.1. 기준 K-IFRS 제1117호 적용 보험계약자산, 보험계약부채는 각각 OO백만원, OO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전환방법이 보험계약부채 평가액 등에 미치는 영향(예상치)〉

(단위: 백만원)

전환 방법	대상 연도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자산 ¹⁾	보험계약부채 ¹⁾	보험계약마진 ²⁾
완전소급법	2017~2021년			
공정가치법	2016년 이전			
합계	-			

주 1) 보험계약자산과 보험계약부채에는 각각 재보험계약자산, 재보험계약부채를 포함하고, 모든 구성 항목을 포함하여 전체 금액을 기재

2) 보험계약자산, 보험계약부채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계약마진은 합산하여 기재

㉕ 보험부채 관련 재무영향

◇◇보험회사가 2022.12.31. 기준 보험부채에 대해 K-IFRS 제1117호를 적용할 경우 보험계약자산 및 보험계약부채는 각각 OO백만원, OO백만원으로 평가됩니다. 보험계약부채에 보험계약대출 현금흐름 등이 OO백만원 반영됨에 따라 부채 감소효과가 발생하였으나, 보유중인 고금리계약의 영향 등으로 결과적으로 보험계약부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IFRS 제1117호 적용시 보험계약자산·부채의 구성(예상치)〉

(단위: 백만원)

구분	K-IFRS 제1117호 적용 자산					K-IFRS 제1117호 적용 부채				
	합계 (A+B)	보험계약 자산(A) 1)2)	보험계약 마진 ⁴⁾	재보험계약 자산(B) ¹⁾³⁾	보험계약 마진 ⁴⁾	합계 (C+D)	보험계약 부채(C) ¹⁾ 2)	보험계약 마진	재보험계약 부채(D) ¹⁾³⁾	보험계약 마진 ⁴⁾
평가 액										

주 1) 보험(재보험)계약자산, 보험(재보험)계약부채는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전체 금액을 기재

2)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험계약집합 관련 자산, 부채 기재

3) 보험회사가 보유한 재보험계약(출재보험계약)집합 관련 자산, 부채 기재

4) 보험(재보험)계약자산, 보험(재보험)계약부채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계약마진은 구분하여 별도 기재

※ 상기 사례를 참고하되, 재무제표에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분석 등을 추가하여 공시 가능